

문화접대비 활용 설명서

문화로 인사합시다!

• 손 에 잡 히 는 문 화 접 대 •

CUWL

TWARRE

문화접대비 활용 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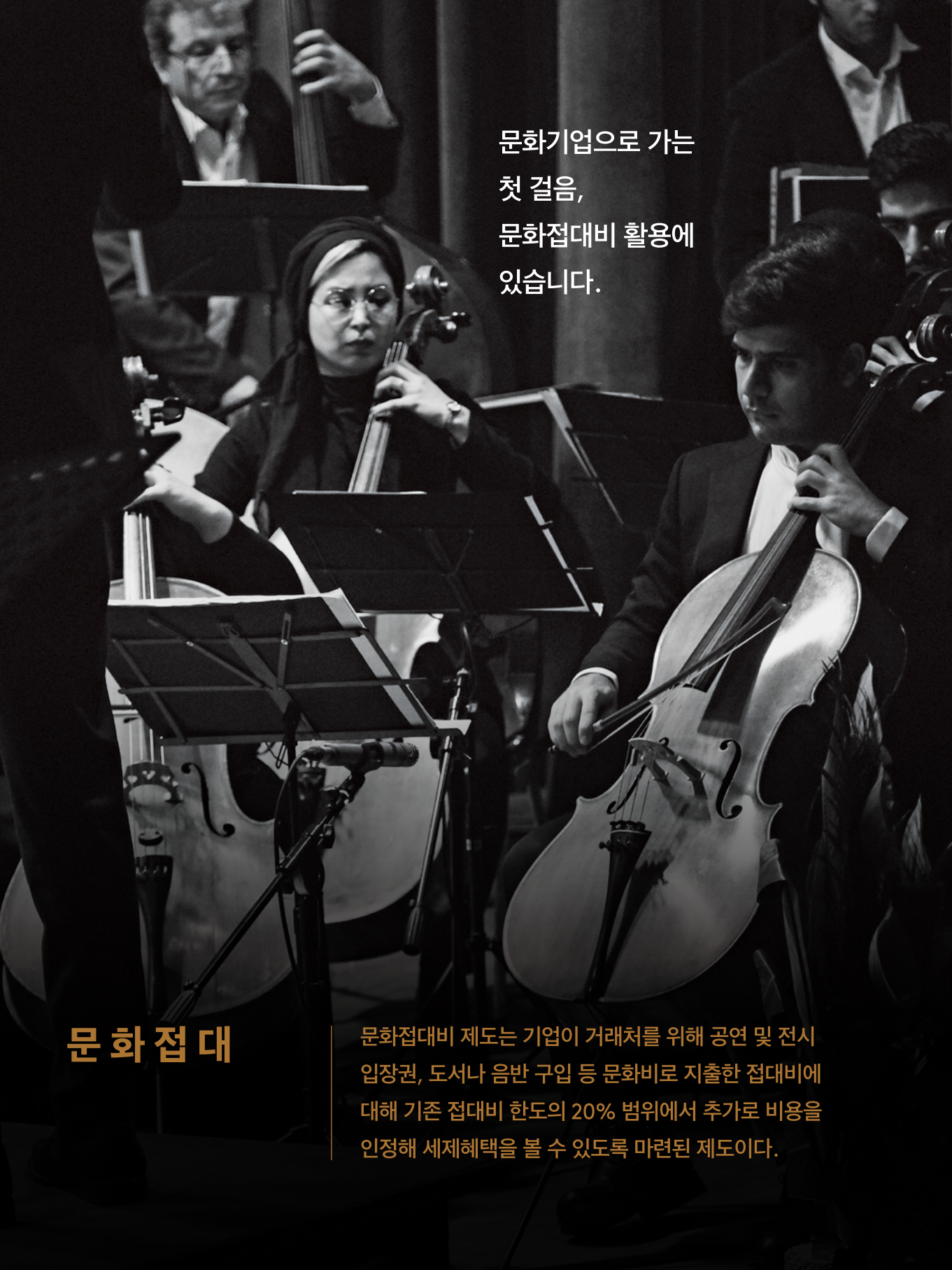
문화로 인사합시다!

• 손 에 잡 히 는 문 화 접 대 •

 한국메세나협회

메세나(MECENAT)란 기업이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한국메세나협회가 설립되어 현재 220여 개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상호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영역에 걸쳐 기업과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www.mecenat.or.kr



문화기업으로 가는
첫 걸음,
문화접대비 활용에
있습니다.

문화 접대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공연 및 전시 입장권, 도서나 음반 구입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비용을 인정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접대비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접대·교제·사례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세법상 소비성 경비로 간주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된다. 접대비는 그 지출성격상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 복리후생비, 회의비 및 견본비 등과 유사하므로 세법에서는 이를 판별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접대비와 접대비가 아닌 다른 비용들과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접대비는 일정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한도가 초과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광고선전비나 복리후생비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법인세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회계상 사용하는 '수익'과 '비용'의 개념은 세법상 '익금'과 '손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접대비는 회계상으로는 모두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현행 세법은 건전한 상거래 확립을 위해 일정 한도 내의 금액만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이 지출하는 접대비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이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향응 접대이다. 이로 인해 접대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며, 접대비가 확대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를 적정하게 규제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액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한도를 정하고 있다.

접대비와 유사한 용도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비용

구분	대상	업무관련성	손비 인정
접대비	특정인	있음	한도초과액은 불인정
기부금	특정인	없음	한도초과액은 불인정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 (일반 소비자)	있음	전액 인정
복리후생비	내부 직원	있음	전액 인정

이 과정에서 해당 접대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손금산입'이라고 하고, 성격에 맞지 않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접대비의 손금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이다. 기본한도의 경우 일반기업은 '1,200만 원 X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12', 중소기업은 '3,600만 원 X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12'이다. 수입금액별 한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하여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적용하였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접대비라는 명칭은 업무추진비로 바뀐다. 접대비라는 명칭은 1968년 관련 법 제정 때부터 계속 써왔는데, 기업의 통상적인 업무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이로 인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명칭 변경을 1년 간 유예하고 2024년 1월부터 변경된 명칭을 사용할 예정이다. 용어는 변경되지만 접대비의 실제적 범위는 동일하다.

문화접대비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고객에게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 등의 티켓이나 도서, 음반, 미술품을 구입하고 이를 선물하는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를 말합니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비용을 인정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7년 기업의 건전한 접대 문화를 조성하고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고자 도입한 정책으로 문화비를 통한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 초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법인세 산정 과정에서 접대비는 매출액 대비 일정 한도를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접대를 진행한 기업의 경우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기존 접대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문화접대는 '접대'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문화를 활용한 접대는 거래처에 문화 체험이라는 건전한 접대를 통해 색다른 기회를 선사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접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퇴근 후 여가시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향응성 접대 감소로 인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직장생활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문화예술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까지 있으니 1석 3조가 아닐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들의 바람직한 접대문화 정착과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다. 기업들이 문화접대를 통해 거래처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직문화 강화에도 도움이 되어 문화경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의 예술소비를 통해 문화예술계를 간접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예술계의 상생을 도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문화접대비
제도
히스토리**

문화접대비 제도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꾸준히 개정을 거듭하며 추가 손금산입 요건을 완화하고 문화접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문턱을 낮춰왔다.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문화접대 대상 금액을 꾸준히 확대해 나갔으며, 손금 한도 역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손금 인정이었던 부분이 20%로 확대된 바 있다.

문화접대의 범위도 제도 도입 초기 공연, 전시 입장권에 국한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등록문화재 입장권, 문화예술 강연료, 기획행사 행사비 등 단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들을 확장해 나갔으며 2019년 미술품 구입을 통한 접대까지 문화접대로 인정하게 되었다.

<p>대상 금액 조정</p>	<p>2007년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총 접대비 금액의 <u>3% 초과 시</u> 손금산입 적용</p> <p>2011년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총 접대비 금액의 <u>1% 초과 시</u> 손금산입 적용</p> <p>2014년 제한조건 폐지</p>
<p>손금 한도 확대</p>	<p>2007년 문화접대비 지출액을 접대비 한도액의 <u>10%까지</u> 추가 손금 인정</p> <p>2016년 문화접대비 지출액을 접대비 한도액의 <u>20%까지</u> 추가 손금 인정</p>
<p>접대 범위 확대</p>	<p>2010년 문화관광축제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 혹은 이용권 구입</p> <p>2012년 등록문화재의 입장권 구입 등</p> <p>2015년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강연료 등</p> <p>2016년 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비,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는 행사비</p> <p>2019년 미술품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 원 이하) 식사·주류 포함된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p>



문화접대 인정 범위 및 활용

문화접대의 인정 범위는 상당히 넓고 다양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에 근거하여 문화접대로 인정되는 항목은 오른쪽과 같다.

‘문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공연, 전시 혹은 박물관의 입장권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문화접대비 적용 항목이다. 또한 스포츠, 영화, 영상 DVD,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등 문화산업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관광공연장, 등록문화재 입장료뿐 아니라 문화예술 관련 강연료, 기업 자체 비용을 들여 기획하는 문화예술 행사 등도 문화접대의 영역으로 인정된다. 2019년부터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을 구입해 선물하는 것까지 문화접대비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국가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2012.02.02 신설, 2020.05.26 개정)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 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2015.02.03 신설)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2016.02.05 신설)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2016.02.05. 신설)
13.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 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019.02.12 신설)

※ 국외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문화접대비 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연극,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 관람권을 선물하거나, 공연장의 좌석을 예약하여 거래처를 초청하거나 거래처 직원들을 위해 공연을 직접 개최할 수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입장권을 구매하여 선물하거나, 박물관과 미술관의 협조를 통해 정규 개장 외 시간에 거래처를 초청,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하거나 글쓰기, 합창, 연극 활용 팀워크 강화, DSLR 사진 촬영법, 클래식 강의 등 거래처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강연을 거래처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도서나 간행물을 통한 문화접대를 할 경우 상품권과 전자 출판물 이용권도 도서 및 간행물에 해당된다. 단, 도서 이외의 용도(문구류 구매 등)로 사용되는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한다.

음반이나 영상 제작물, 음원사이트 이용권을 구매해 선물할 수도 있으며, 영화 관람권을 구입하여 고객이나 거래처에 선물하거나, 영화관을 대관하여 거래처를 초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혹은 영화 예매만 가능한 상품권을 거래처에 선물할 수도 있다. 문화관광축제가 다양하게 개최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 이용권을 구매하여 거래처에 선물하거나 축제 현장에 직접 초청하는 것 역시 문화접대로 인정된다.

위라벨 시대,
문화접대로 직원들이
행복해집니다.

문화접대의 효과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의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인만큼,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법인세 감면 효과'이다.

문화접대의 효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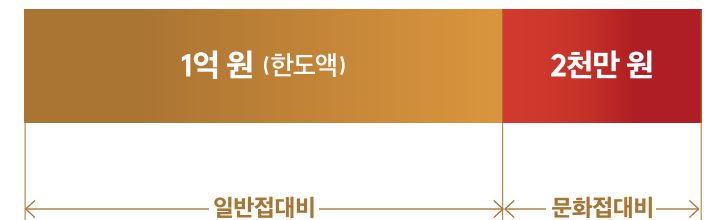
문화접대비를 활용하면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의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인만큼,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법인세 감면 효과'이다.

기업 접대비의 한도가 1억 원인 A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기업이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인 2천만 원까지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접대비의 총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증가되는 것이다. 손금산입이 되는 금액이 증가된다는 것은 법인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법인세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상대적으로 접대비 한도가 작은 중소기업에게 더 의미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접대의 빈도나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이 높고, 세무상 정해진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접대비 한도액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세무상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화접대비 제도를 활용한다면 이미 접대비 한도가 채워졌다 하더라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예시. 접대비 한도액 1억 2천만 원까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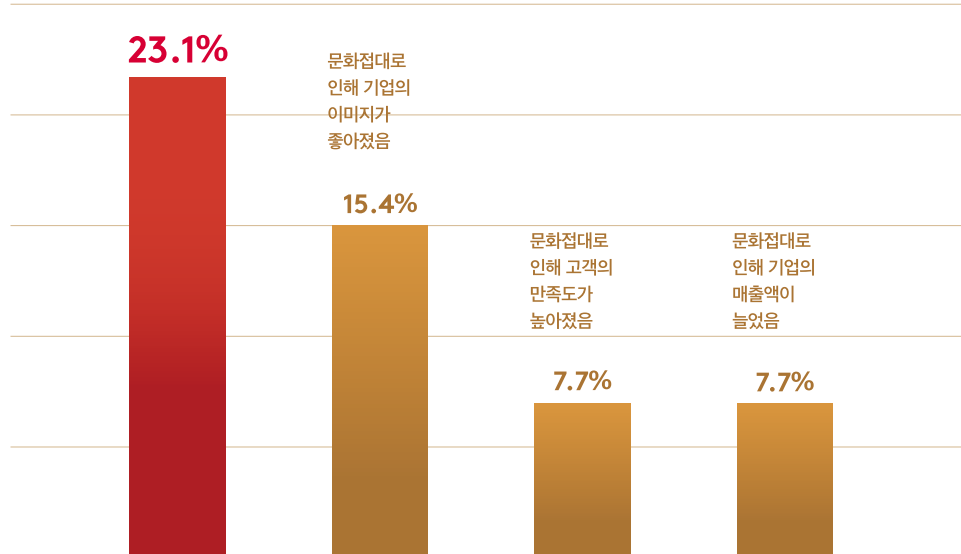


문화접대의 효과 2

문화접대는 임직원의 조직만족도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문화접대를 실제로 실행해 본 기업 임직원들은 문화접대가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진행한 ‘2021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 결과 문화접대를 통해 변화된 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3.1%가 문화접대로 인해 직원의 직장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문화를 활용한 접대는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문화접대는 접대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접대를 진행하는 사람에게도 만족도가 높은 접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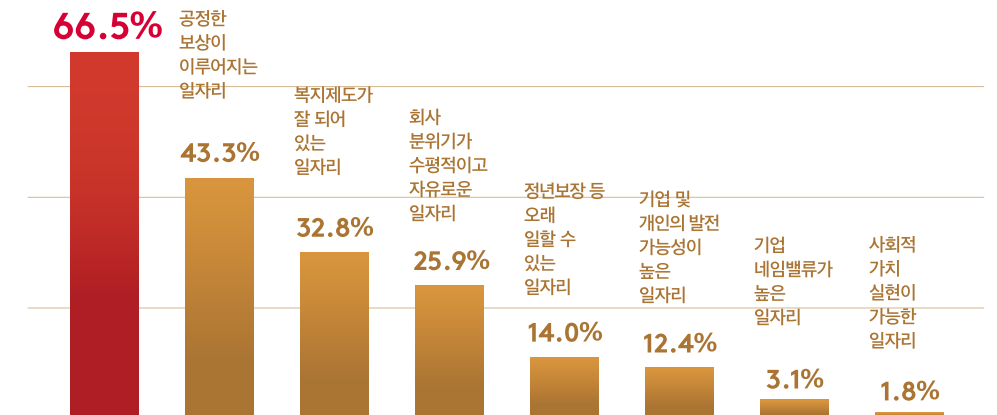
문화접대로
인해 직원의
직장 만족도가
높아졌음



출처 : 2021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 Base: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기업, N=81, 단위: 명, 중복응답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전국 20~39세 남녀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괜찮은 일자리의 판단 기준은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일자리’라는 응답이 66.5%로 나타났다. 기업은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이하 워라밸)’을 그 어떤 업무조건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다. 술과 유흥으로 점철되는 접대나 영업활동이 워라밸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력 유출에 대한 고민이 많은 기업의 경우 기업경영 전략에서 임직원의 워라밸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여가시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문화접대는 향응성 접대의 감소로 이어져 임직원들의 워라밸 확보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접대 방식이다.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일자리



출처 : 2022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인식조사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 20~39세 남녀 구직자 1,000명 대상

문화접대의 효과 3

문화선물은 고객분들께 기업에 대한 특별한 기억과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문화선물의 힘은 단순히 아름다운 무언가를 보았다는 즐거움에서 끝나지 않는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준 이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이는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이어진다. 문화체험이라는 특별한 기억으로 인해 두 기업간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이는 '접대'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결과물이 된다.



티켓 구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공연 티켓을 구매해 고객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공연을 관람하신 고객분들이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하면서 기분을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들의 명연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면서 기존 음주·유흥접대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히스보협증개 한만영 대표이사



공연 기획

평소 당사에 도움을 많이 주는 협력업체와 현장에서 일하는 고마운 직원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던 중, 음악회 공연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후 함께한 분들이 “마음속 깊이 설렘과 감동을 받았고, 좋은 공연을 관람하고 갈 수 있어 참 행복했다”라고 소감을 전해 왔습니다.

다진 이형경 대표이사



강연 기획

공연이나 강좌가 있을 때마다 초청장이 와서 부담 없이 참석하곤 했습니다. 로얄라운지에서 열린 인테리어 강의는 시장 트렌드를 읽는 데 도움이 됐고, 시장조사 차원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들을 생각입니다. 이러한 문화접대가 두 회사 관계를 끈끈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로얄앤컴퍼니의 협력사 범한공업 관계자



도서 증정

더성도는 거래처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자필편지를 동봉한 책을 선물합니다. 더성도의 오랜 전통입니다. 명절에도 다른 선물 없이 책이나 음반을 선물하는 게 문화산업(인쇄산업)에 종사하는 회사 정체성에 적합하고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20년 간 책 선물을 했더니 이제는 고객들이 다음 책을 기다릴 정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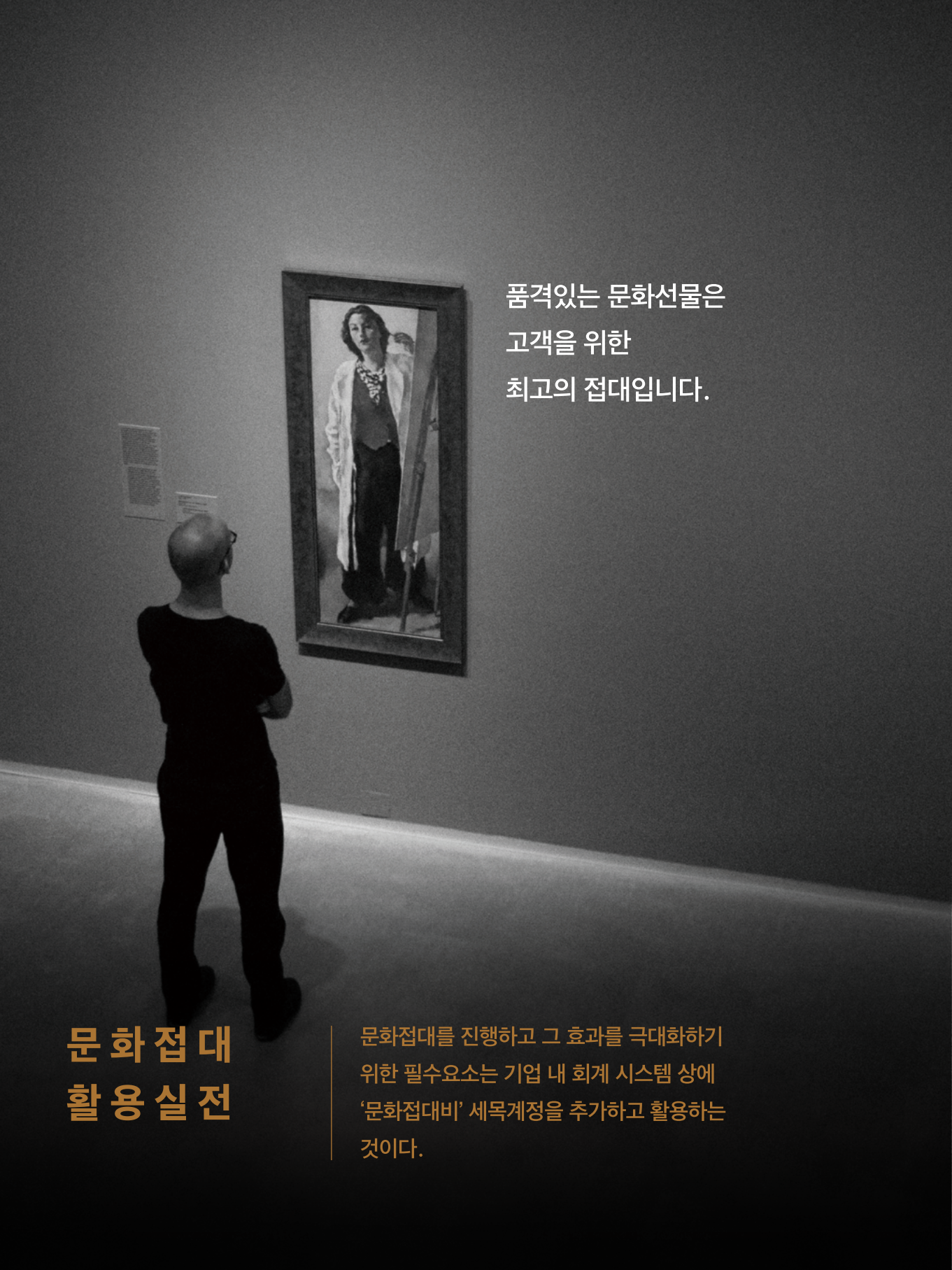
더성도 김상래 대표이사



음반 증정

2007년부터 예술단체 '행복나무플러스'의 송년음악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10년 간의 공연 프로그램 중 관객 호응이 높았던 곡들을 선별해 음반을 제작, 고객사와 VIP 인사 등에 선물했습니다. HK와 협력업체, 고객사들 모두 차가운 금속을 다루는 일을 하는데, 모두가 음악을 향유하며 삶을 훨씬 풍요롭게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문화접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HK 계명제 회장



품격있는 문화선물은
고객을 위한
최고의 접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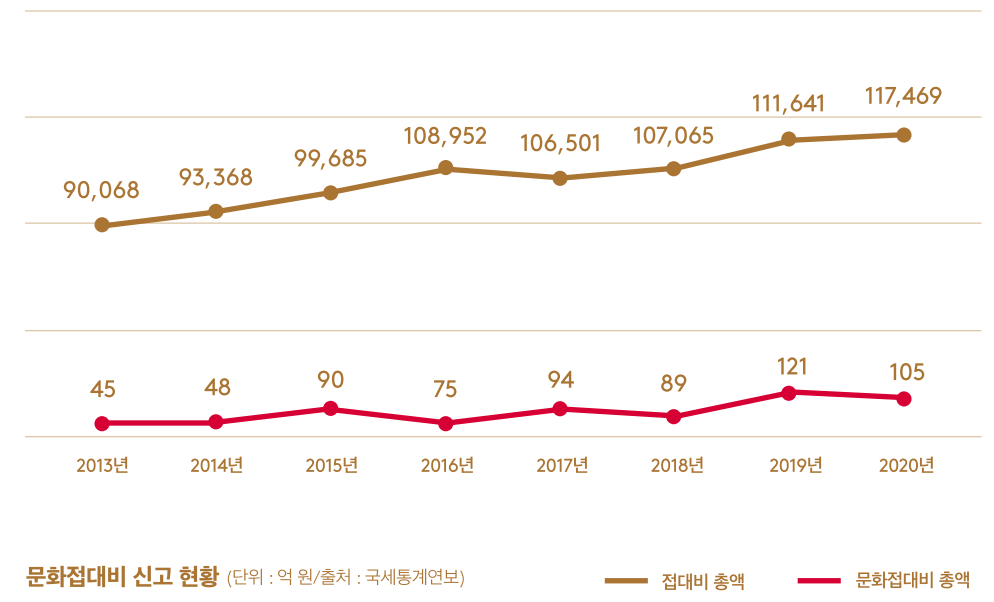
문화접대 활용실전

문화접대를 진행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는 기업 내 회계 시스템 상에
'문화접대비' 세목계정을 추가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문화접대 신고 현황 및 회계 처리 방법

문화접대비 총액은 전체 접대비 총액의 0.1% 수준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의 문화접대비 사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세청에 신고된 접대비 총액 과 문화접대비 총액을 비교해보면, 2020년 신고된 접대비 총액은 약 117.7조 원에 달하지만 문화접대비 신고 총액은 105억 원에 불과하다. 2013년부터의 데이터를 비교하면 접대비 신고 총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고 문화접대비 신고 총액 역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전체 접대비 신고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0.1%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접대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화접대비가 아닌 일반 접대비, 홍보마케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문화접대비 신고 총액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 한몫 하고 있다.



연도별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조정명세서(갑)’ 서식 중 문화접대비 지출액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이다. 기업이 문화접대비를 지출했다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란에 문화접대비 지출 금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국세통계에 집계되지 않는다.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법인 중 상당수가 법인세 신고 시 문화접대비를 신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이 전체 접대비 지출액 대비 0.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법인세 절감 효과를 위해 ‘문화접대비’ 세목계정 추가 필수

따라서 문화접대를 진행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기업 내 회계 시스템 상에 ‘문화접대비’ 세목계정을 추가하고 비용처리에 활용하는 것이다. 접대비 계정 안에 ‘문화접대비’로 별도로 분리된 세목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 시 문화접대비 총액을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세목계정만 추가 등록한다면 연간 기업에서 사용하는 문화접대비의 집계가 용이해진다. 회계 프로그램 상 접대비의 세부 계정으로 문화접대비를 추가하고,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추가한 문화접대비 계정에 전표를 입력하는 것이 문화접대비 활용의 시작이다.

이후 법인세 신고 시 회계 프로그램에 등록된 ‘문화접대비’ 총액을 ‘접대비조정명세서(갑)’ 서식 내 ‘문화접대비 지출액’ 및 ‘문화접대비 지출액’으로 기재하고, ‘문화접대비 한도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문화접대비 신고는 완료된다.

접대비조정명세서(갑) 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개정 2021. 3. 16.> (앞쪽)

사업 연도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금 액	
① 접대비 해당 금액			
②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③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 - ②)			
일반 접대비 한도	④	$1,200\text{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times \frac{\text{해당 사업연도 월수()}}{12}$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35/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25/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6/10,000)	
	⑤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35/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25/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2020년 사업연도 분은 6/10,000)		
	⑥ 소계		
⑦ 수입금액 기준	$(⑤-⑥) \times 20(10)/100$		
⑧ 일반접대비 한도액(④ + ⑥ + ⑦)			
문화접대비 한도	⑨ 문화접대비 지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⑩ 문화접대비 한도액 (⑨와 ⑧ ×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⑪ 접대비 한도액 합계(⑧ + ⑩)			
⑫ 한도초과액(⑤ - ⑪)			
⑬ 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⑫)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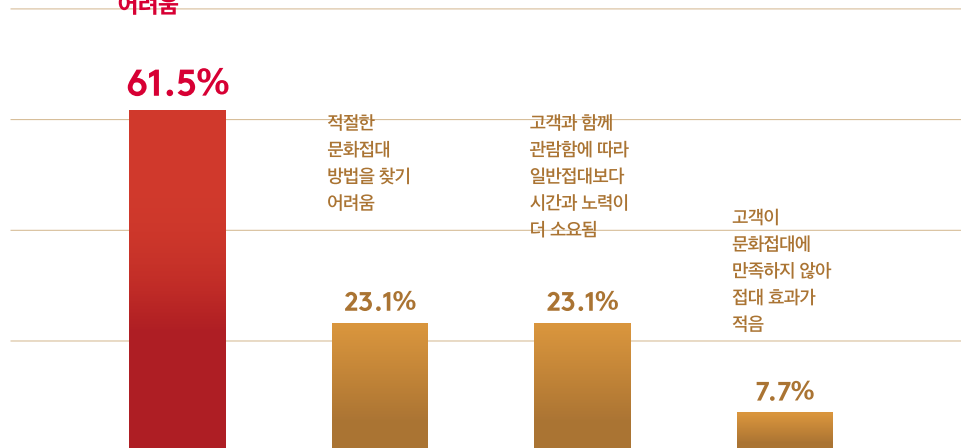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손쉬운 문화접대

문화접대는 어렵다?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진행한 ‘2021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 결과, 문화접대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접대를 진행하는 기업의 61.5%가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했다. 식사, 선물 위주의 일반 접대와 달리 문화접대는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 중 고객이 만족할 만한 장르를 선택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공연예술 유형의 입장권을 제공할 경우 고객이 공연장에 방문할 수 있는 날짜, 시간까지 맞추어 제공해야 비로소 접대 효과가 있다. 고객의 취향을 잘못 파악할 경우 오히려 불쾌감을 줄 위험성까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출처 : 2021년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 Base: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기업, N=81, 단위: 명, 중복응답

문화접대가 더 쉬워집니다.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문화예매권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문화예매권을 활용한다면 문화접대를 보다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문화예술 유통 플랫폼인 인터파크와 함께 기획한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문화예매권은 인터파크에 등록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이다. 문화예매권을 활용하면 고객의 취향이나 일정에 대한 걱정 없이 보다 손쉽게 문화접대를 진행할 수 있다.

TIP. 상품권을 활용한 문화접대 시 유의사항

1.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2. 내국법인이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 문화 예매권 —

예매권 금액 100,000원
예매권 번호 MECENAT2022063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공연영상 앨범·온라인 음악회… 코로나 속 문화집대 달라졌다

문화로 송년인사시다 ②

코로나19가 기업들의 문화집대 풍경을 바꾸고 있다. 그동안 공연을 직접 기획해 고객사와 VIP 고객들을 초대하며 문화집대에 나서던 기업들이 올해 코로나19로 대면 공연이 어려워지자 음반 제작·비대면 공연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동원해 문화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기업의 활동은 코로나19로 한파를 겪고 있는 문화공연계에 큰 힘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12년 음악회 앨범에 담아 동서식품, 고객에게 선물

종근당·메트라이프 등 비대면 음악회 열어 큰 호응

동서식품은 지난 12년간 가을마다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한 ‘함께하는 삶의향기 동서커피콘서트’ 공연을 진행했다. 문화집대의 일환으로 주요 고객들을 이 행사에 초대해왔다. 누적 관객 1만 6000명에 매년 만석을 기록하는 인기 공연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자 올해 이 행사를 취소했다. 그 대신 지난 12년간의 실황 연주 중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10곡을 선별해 공연 영상을 담은 USB 앨범 1만8000장을 특별 제작해 고객들에게 선물했다. 이번 USB 앨범에는 피아니스트 박종화,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바리톤 김동규 등 국내 대표 음악가들의 주옥같은 연주가 담겼다.

종근당은 2011년부터 매년 병원을 찾아 진행해온 ‘오페라 희망이아기 콘서트’를 올해 온라인 콘서트로 전환했다. 오페라 희망이아기 콘서트는 병원에서 부병 중인 환자와 가족,

의료진을 위로하기 위해 진행된 문화사업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병원 내 공연이 어렵게 되자, 아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온라인 음악회를 발상을 전환한 것이다.

팝클림니스트 김태훈의 사비로트리니타리벨하모니 오케스트라, 베이스 손태진, 소프라노 오신영, 뮤지컬 배우 민우혁, 가수 박기영 등 대중적인 지도가 높은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정동 오페라 아리아부터 뮤지컬, 팝페라 등 다양한 음악을 선보였다. 또 공연 중 실시간 응원 댓글을 보낸 온라인 청중 50명을 추첨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펼쳤다.

메트라이프도 온라인 콘서트를 적극 활용했다. 메트라이프는 지난 7월 세종문화회관에서 무관중 온라인 콘서트 ‘메트라이프 Gift’를 진행했다. 내이비TV 라이브와 브이라이브(VLIVE)를 통해 무려 1만여 명이 관람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이번 공연은 단순 클래식 공연을 넘어 한국 전통음악과의 결합을 시도한 퓨전 연주회로 진행됐다. 국악단체 엑스(AUX)가 한국 전통음악을 연주했고, 정애인·비장애인 연주자들이 함께 모인 오케스트라,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가 대중에게 친숙하고 인기 있는 곡을 선보였다. 오케스트라 선율과 태평소를 비롯한 국악의 하모니가 어우러진 아리랑 연주 등 참신한 음악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중관 한국메세나협회 사무처장은 “많은 기업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박종화,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바리톤 김동규 등 국내 대표 음악가들의 주옥같은 연주가 담겼다.”
종근당은 2011년부터 매년 병원을 찾아 진행해온 ‘오페라 희망이아기 콘서트’를 올해 온라인 콘서트로 전환했다. 오페라 희망이아기 콘서트는 병원에서 부병 중인 환자와 가족,



지난 9월 경기도 평택 소재 현대진 공장에서 열린 음악회 장면. (사진 제공·현대진)

문화집대로 협력사와 한마음

문화로 송년인사시다 ③

가을밤 가구공장 가득채운 음악 다진, 협력사 초청 ‘음악회’ 개최 공연 함께 보며 우의 다지고 출연료 등 비용처리 ‘일석이조’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사무용 가구 전문기업 (주)다진은 4년 전부터 직접 음악회를 기획해 왔다. 임직원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에서다. 2016년 처음으로 평택문화회관에서 영화음악을 주제로 한 연주회를 열었고, 그 뒤 평택시청 광장에서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주회를 개최했다. 이

영경 대표는 “자체 음악회를 시작한 2년 뒤 한국메세나협회를 통해 문화집대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2018년부터는 협력업체까지 초대하는 문화행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다진이 연주자들에게 지급한 출연료는 전액 문화집대로 인정돼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일반집대비 한도의 20%까지 문화집대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일반집대비 한도가 1000만 원인 경우 문화집대를 통해 추가로 2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화집대 알리기 사업에 나선은 한국메세나협회가 이번 음악회에 2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기본 좋은 가을바람이 살랑거리던 지난 9월 25일 밤에 공연을 했다. (주)다진 공장에 귀에 익숙한 클래식 선율이 흘러나왔다.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등 주옥같은 명곡들이 차갑지만 한겨울 공연에 따스한 공기를 불어넣었다.

KBS교향악단 음악감독을 역임한

지휘자 함석익이 이끄는 ‘함석익과 심포니소’이 이곳 사내 공간에서 작지만 풍성한 연주회를 펼쳤다. 마침 회사 내부에는 층고가 높게 트인 공간이 있었다. 덕분에 좋은 음향과 울림이 가능해 연주의 격을 높일 수 있었다.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과 소프라노 이은보라가 협연자로 나서면서 연주회는 점점 풍성해져 갔다. 미국 명문 커티스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줄리아드스쿨에서 최고연주자 과정 중인 송지원은 레오 오펜드 모차르트 국제콩쿠르와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주목받고 있는 신예 연주자다.

‘(주)다진과 함께하는 가을밤의 음악 페스티벌’에 참석한 60여 명 관객의 입가엔 연주회 내내 기본 좋은 미소가 감돌았다. 객석에선 (주)다진 임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서른 명도 함께 어울렸다. 협력업체 측에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던 (주)다진 측에서 직접 기획한 연주회에 협력업체 인사들을 초대했다.

이 대표는 “협력업체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납기인데, 이를 성실히 지켜주는 협력업체 측에 감사의 마음을 공연으로 전했다”며 “사내 공간을 활용에 음악회를 열어 한마음이 됐다”고 설명했다.

관객들은 기성 연주회에서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연주를 즐기는 분위기였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윌리엄 텔 서곡 중 피날레와 헝가리 무곡을 연주할 땐 목소리로 따라부르는 관객들이 있을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다. 마지막 곡이었던 베토벤 교향곡 3번 연주가 끝나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관람을 마치고 자리를 뜨는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주)다진 측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고 감동을 많이 받았다.” “좋은 공연 관람해 참 행복했다”며 기본 좋은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문화집대 효과를 톡톡히 본 사례다.

오수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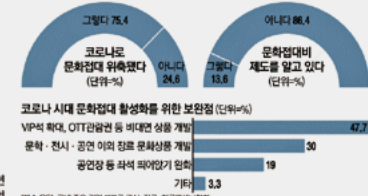
접촉 적은 VIP석·OTT 관람권… 문화로 신년 인사합시다

이젠 선진국이다 기업이 예술 꽃피운다 ④

메세나소, 기업 1000곳 설문 47% “비대면 문화상품 개발”
집대비 20% 법인세 혜택 문화집대비 제도 활용해야

실제로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희관)가 최근 국내 기업 10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75.4%(75.4%)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화집대가 위축됐다. 문화집대비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실제 문화집대비를 지출한 기업은 8.8%(1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집대비 제도”를 기업 집대비 한도가 초과할 때 문화집대비로 지출한 금액의 20%까지 비용으로 추가비용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형 정보공개에 따르면 2020년 신고된 법인 집대비 총액 11조7469억원 중 문화집대비로 신고된 금액은 105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0.09%의 비중으로 연례미이전연 2019년의 0.11%보다 문화집대비가 지출이 어려운 수직이 실제로 확인됐다. 문화집대비로 인건비·세금·추진비는 2020년 기준 23억 1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문화집대비 지출도 인건비 상신유발계수 등 가치 창출비용은 약 250억8000만원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시를 구입했고, 15.4%는 법인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고객층 초청 함 것으로 응답했다.

또 향후 문화집대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으로는 응답 기업 중 56.5%가 세계은행의 확대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38.3%는 문화집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6.1%는 경영진의 의지를 꼽았다. 코로나19 시대에 위축된 문화집대 활성화를 위해 47.7%가 ‘비대면 문화상품의 개발’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집중을 최우선시한 VIP석·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관람권 등이 거론됐다. 문화집대 지출과 별개로 응답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680억원이었다.

이후에 100만원 이하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도 문화집대비 인정받는다. 기업들은 소액 미술품까지 문화집대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미술계 영업에서 작품 유통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0년 이상 지원되고 있는 세계 공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내 기업 중 13.6%만이 문화집대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조사에서 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이 13.2%에 불과했던 것과 비슷한 수치다. 문화집대를

활용하지 못하고, 알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문화집대를 활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수치도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 문화집대 시 주로 활용하는 방법별 비중을 보면 응답 기업 중 53.6%는 공연·전시·박람회 관람권을 선물했다. 스포츠관람권과 영유권관람권은 나



평택시청 광장에서 열린 음악회 모습. (사진 제공·평택시청)

2022. 1. 19 매일경제

“예술가 후원, 대기업만 할 수 있는건 아니죠”

이제는 문화로 인사합시다 ⑤

서울 서초에 법조타운 안개운데 자리한 리포지토리엔터테인먼트는 선한결과를 맺은 분위기였다. 지난 10일 저녁 이곳 화이팅에서 열린 ‘리포지토리엔터테인먼트’ 공연은 흥행 성공을 맞았다. 이날 첫 곡으로 ‘리포지토리엔터테인먼트’ 공연은 흥행 성공을 맞았다. 이날 첫 곡으로 ‘리포지토리엔터테인먼트’ 공연은 흥행 성공을 맞았다.

대기업 회장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도”라고 말했다.

공연을 기획한 필름코리아 김태환 대표는 “중소기업 문화집대비 지원이”인 것이다”고 해서 신중을 다했는데, 현장 공연 신청서에 격을 다 저우기가 수 있을 위쪽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초대를 받은 기업 임직원 52명은 노모와 딸, 부인까지 온가족이 공연장을 찾았다. 그는 “두 번째 공연을 보게 됐는데 유정림 때 나가 너무 노래를 잘하고 재미있었다.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왔다. 송학림 때 발이 푹푹 찢어졌고 있어서 더 뜻 깊은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올해도 문화집대비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상담과 홍보를

2019. 12. 18 매일경제

“뜻깊은 문화 송년회…나를 위한 선물”

이제는 문화로 인사합시다 ④

두산인프라코어·현대백화점 문화집대 참석자들 큰 호응

선언문규원은 “오늘 음악회가 아이에게는 첫 클래식 공연”이라며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 덕에 아이에게 문화생활을 선물할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죠”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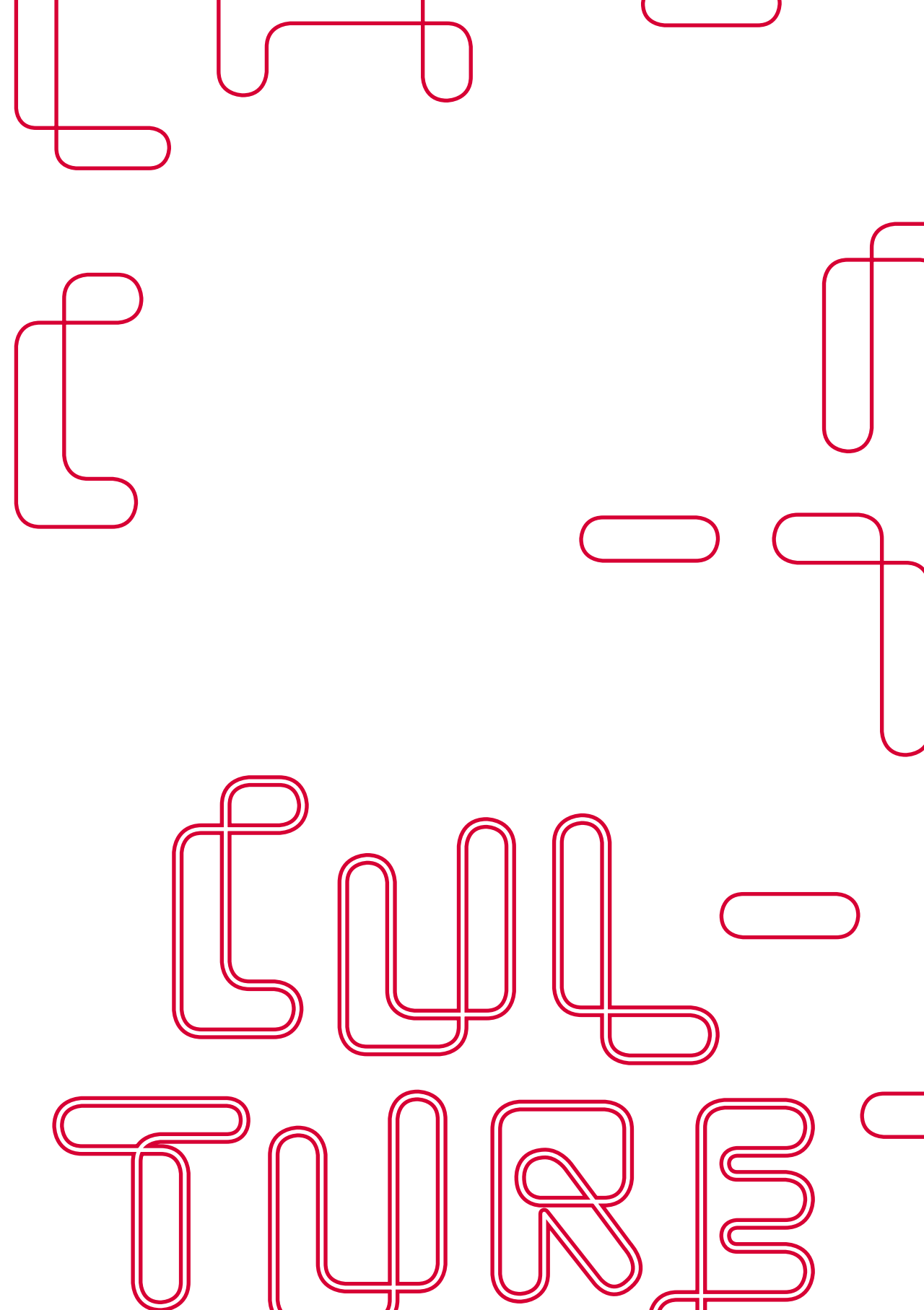
이날 송년회 인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음악회로 직원들이 탐낼 일하는 공간이 아름다워 선물과 가족의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찬 듯하다”며 “연주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악회를 통해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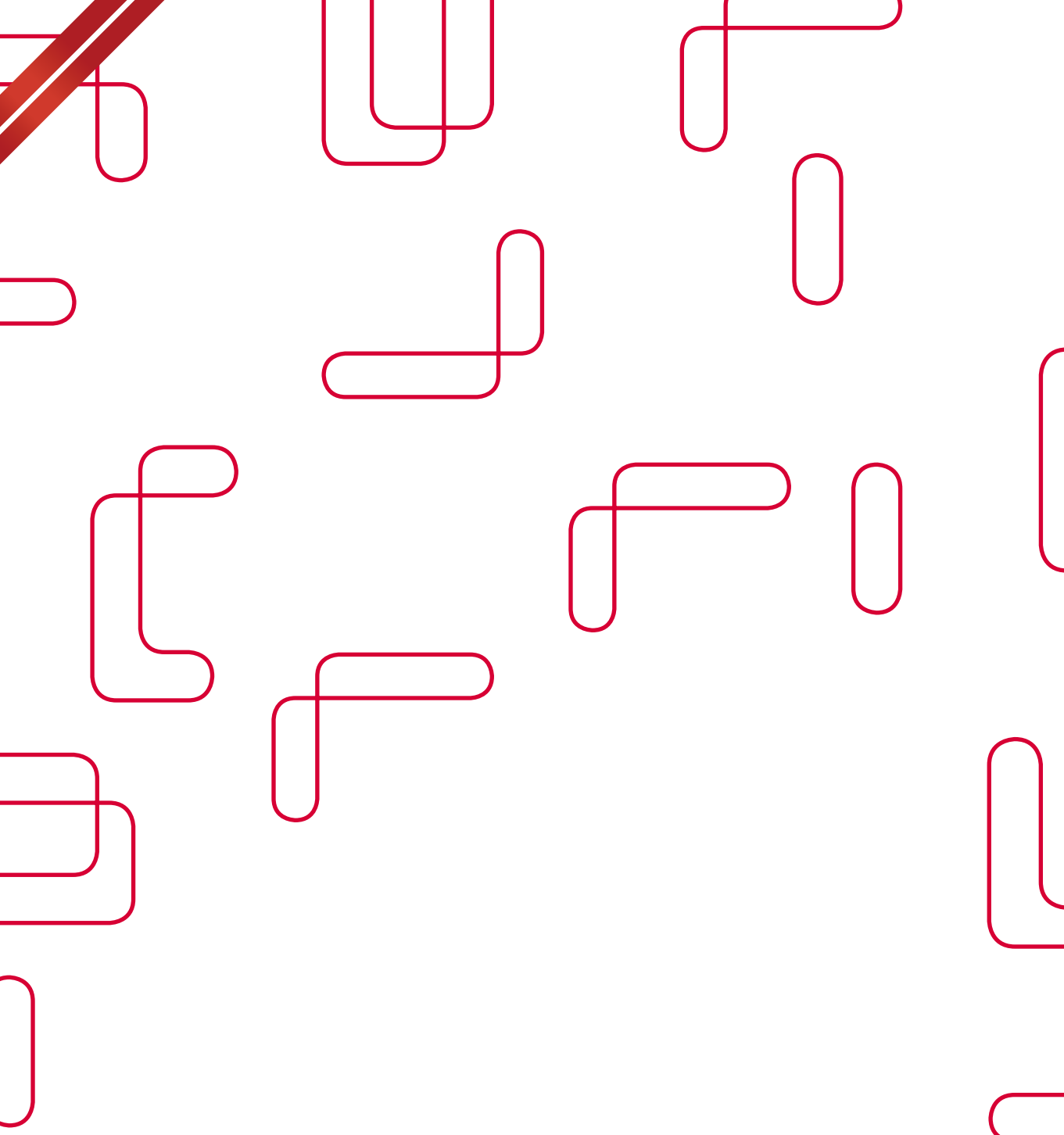
11월 28일 현대백화점 본점 필름코리아에서 열린 문화 송년회.




한나, 가수 소리씨도 함께해 클래식과 가요가 어우러진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 도중 결혼 10주년을 맞은 두산 가족의 사연도 소개됐다. 박정준

문화접대비 활용 설명서
문화로 인사합시다!

발행처	한국메세나협회
발행일	2022 . 12
발행인	김희근
편집	Arts & Business팀 02-784-0952
감수	한미회계법인 김소영 회계사
디자인	청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6층
대표번호	02-761-3101~2
웹사이트	www.mecenat.or.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은 기업들의 바람직한 접대문화 정착과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